

③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

※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2023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예정자는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

※ 해외 어학연수자,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(예: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, 평생교육원 등)에 입학한 자는 제외

【국내대학원】 : 석·박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한 자

※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른 ‘학과간 협동과정’, ‘학·연·산협동과정’을 통해 석·박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 ‘국내대학원’ 진학자로 입력

【국외대학원】 : 석·박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

【기타】 : 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·국외 대학에 진학한 자와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·국외전문대학에 재 진학한 자

【진학률(%)】 : (진학자/학위취득자) × 100

※ 학과명칭 변경, 신설, 폐과,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

■ 참고사항

- 졸업생 진학 현황(일반대학원)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(한국교육개발원, 2022. 12. 31. 기준)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
-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